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21호

나. 제 출 자 : 신건택의원외 5명(찬성의원 10명)

다. 제출일자 : 2016년 2월 15일

라. 회부일자 : 2016년 2월 15일

2. 제안이유

노사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실무적으로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실무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본 개정안은 복잡한 노사간 의견대립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서울지역 노사민정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는 2000년부터 운영해 오던 노사정위원회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1)에 따라 2011년 주민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서울 모델협의회"를 두고 있음.

¹⁾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민정협의회의 특별위원회인 서울모델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2)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사정 주체간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하였으며 (2000.08), 서울시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노사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노사간 분쟁을 조정하고 화합을 촉진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음.〈참고자료 2〉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요〉

O 운영근거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 성 : 위원장(시장), 근로자대표 1, 사용자대표 1, 공익대표 5, 시의회의원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기 능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 O 임 기 : 2년 (연임가능, 임기만료된 경우 후임자 위촉시까지)
- 회의요구 : 위원장, 재적위원 1/3이상
- 운 영 : 안건발생 시 수시 회의개최

○ 당초의 주민대표 참여를 통한 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달리.

²⁾ 제7조(특별위원회) ①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3년간 단 두 차례의 본회의만이 개최 되었으며, 2015년 개최된 한 차례의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 되었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3년간 본회의 개최 현황 〉

구 분	2013	2014	2015	계
 노사민정협의회	_	1	1	2

〈최근 3년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내용 〉

일 시	안 건	비고	
2014.8.17	노사민정협의회 공익대표 및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위촉	위원위촉	
2015.7.27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2015.7.27 서울모델협의회 참여기관·인원 확대 (6개기관 18명→11개기관 28명)		

다. 실무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안 제7조의2)

-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동안 근로자 대표 중 일부의 불참에 따른 노동단체의 대표성 부족과 협의회 위원들간의 회의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개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이에 따라 안 제7조의2는 실무위주의 인사를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여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조정을 통해 사전에 각종 사안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조정하고자 함.

- 새롭게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조율이 궁극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실무위원회 설치의 입법타당성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연간 1~2차례 열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형식이 아닌서울지역 근로자들의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노사민정협의회는 산하 실무위원회 이외에도 특별위원회인 서울모델협의회를 두고 있어 여러 위원회의 중첩이 자칫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한편, 위원회 남설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폐지를 유도 하고,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존속 기한을 2년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부속위원회로 본위원회와 달리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무위원회 등에 대한 문제도 위원회 남설을 막는 차워에서 관리가 요구됨.

〈참고자료 1〉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현황('00. 2.14 발족)

('16. 1월 현재)

구	분	현 직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비고
위	원장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59세)		아름다운재단 총괄 상임이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로자 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강 신 표 (54세)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서울시의회 의원('10)	
	용자 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 동 응 (58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 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대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대표	신규위촉 (14.11.18)
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용 석 (45세)	2	도봉구의회 의장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정책자문위원	신규위촉 (14.11.18)
1	}노동 서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임 서 정 (51세)		행정고시(32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노동부 대변인	당연직 (15.2.13)
공 이 대 표	학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박 태 주 (60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前 산업연구노조 위원장 前 참여정부 청와대 노동개혁TF 팀장 前 현대자동차 노사자문위원회 대표	신규위촉 (14.11.18)
	시민 단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	송 보 경 (여 70세)		서울여대, 필리핀대학 사회학박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시민사회단체연대공동대표	
	언론계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성 대 석 (77세)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 KBS 주미특파원 KBS 9시뉴스 행 서울시문화상 언론분과위원장	
	노 동 전문가		이 장 원 (49세)	9	미국시카고대 사회학 박사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정책평가위원	
	법조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허 익 범 (56세)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울고검 검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참고자료 2〉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 현황

('16. 2월 현재)

구분	직 위	성 명	소 속
공	위원장(서울시대표)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위원(서울시대표)	김 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익	위원(서노협대표)	맹주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위	위원(서노협대표)	유상철	노무법인 필 대표 노무사
원 (C)	위원(서사협대표)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대표 변호사
(6)	위원(서사협대표)	배인연	노무법인동화 대표 노무사
	위 원	김현상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n,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노	"	김태영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
동	"	송태섭	농수산물공사노동조합 위원장
_ 조 -	"	오홍태	SH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합 협	"	심현정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의	"	배진원	서울산업진흥원노동조합 위원장
회	"	염상호	서울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 위원장
(11)	"	김 현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위원장
	"	나도철	서울복지재단노동조합 위원장
	"	김국환	서울디자인재단노동조합 위원장
	위 원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사	"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용	"	박현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자	"	변창흠	SH공사 사장
협	"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
의	"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회	"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1)	"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	임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n	이 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